

의안번호	2215527
의 퇴 인	최혁진 의원
회 답 일	2026. 2. 12.
추 계 번호	25C7171

장애인 가족 지원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장애인 가족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
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4억 600만원(연평균
8,1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장애인 가족 실태조사 실시 (안 제7조)	178	-	-	178	-	356	71
장애인 가족지원 기본계획 수립 · 시행(안 제8조)	50	-	-	-	-	50	10
추가재정소요	228	0	0	178	0	406	81

주: 합계는 단수조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제7조(장애인 가족 실태조사)	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장애인 가족의 생활 실태 및 복지 욕구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제8조(장애인 가족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)	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 가족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	의무규정
3	제10조(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 가족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각 중앙장애인 가족지원센터와 지역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함 ※ (제21조 제1항·제2항) 센터는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주거, 재산, 법률, 사후 돌봄 계획 등 미래 설계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고, 장애인 가족이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와 의사를 반영한 개인별 미래 설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	의무규정
4	제12조(개인별 가족지원계획의 수립)	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센터와 협력하여 해당 가족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개인별 가족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5	제13조(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욕구에 맞는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	의무규정
6	제14조(상담 및 심리·정서적 지원)	(제1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심리·정서적 어려움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(제2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간의 정보 교류와 정서적 지지를 위한 동료상담 및 자조모임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	(제1항) 의무규정 (제2항) 재량규정
7	제15조(휴식 지원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 돌봄 제공자의 신체적·정신적 소진을 예방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긴급돌봄 서비스, 단기보호시설 운영, 재가 방문형 돌봄 서비스, 그 밖에 필요한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	의무규정
8	제16조(돌봄 역량 강화 및 정보 제공)	(제1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 돌봄 제공자의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장애 유형별 특성, 의사소통 기술, 위기상황 대처 방법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여야 함 (제2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진단을 받은 장애인의 가족에게 관련 복지, 의료, 교육, 법률 정보를 종합적으로 담은 안내서를 제작하여 제공하여야 함	의무규정
9	제17조(주 돌봄 제공자의 건강권 보장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 돌봄 제공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10	제18조(경제적 지원)	(제1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돌봄으로 인하여 취업이 곤란하거나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주 돌봄 제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돌봄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(제2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비급여 항목 등 본인부담이 과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11	제19조(미래 설계 지원의 기본원칙)	장애인 가족에 대한 미래 설계 지원은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여 이루어져야 함	의무규정
12	제20조(공공후견 및 신탁 지원)	(제1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 돌봄 제공자의 사망, 질병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(제2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산 관리와 생활 보장을 위하여 신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 상담 및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	(제1항) 의무규정 (제2항) 재량규정
13	제22조(비용의 부담)	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제7조(장애인 가족 실태조사)	○	○ 보건복지부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
2	제8조(장애인 가족 지원기본계획의 수립 등)	○	○ 보건복지부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
3	제10조(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	×	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안 제 10조제3항은 센터의 설치·운영 기준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현 시점에서는 센터의 규모 및 센터를 통해 제공할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 등을 알 수 없음
4	제12조(개인별 가족지원계획의 수립)	×	○ 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가족의 개인별 필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, 상담 및 심리·정서적 지원, 휴식 지원, 돌봄 교육 프로그램 제공, 건강검진 실시, 공공후견 및 신탁 지원 등을 실시할 경우 기존 사업의 확대 또는 신규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확대·신설될 사업의 내용과 지원 대상의 범위 및 지원 단가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- 현재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을 통해 보호자에 대한 일시적 휴식 지원, 발달재활서비스 제공, 언어발달 서비스 제공 등을 실시하고 있음(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에 2,544억 7,200만원 편성) - 또한,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부모·가족에게 정보 및 교육지원, 심리 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(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에 54억 400만원 편성), 발달장애인에 대한 재산관리 지원 사업도 실시하고 있음(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에 11억 2,200만원 편성)
5	제13조(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)	×	
6	제14조(상담 및 심리·정서적 지원)	×	
7	제15조(휴식 지원)	×	
8	제16조(돌봄 역량 강화 및 정보 제공)	×	
9	제17조(주 돌봄 제공자의 건강권 보장)	×	
10	제18조(경제적 지원)	×	
11	제19조(미래 설계 지원의 기본원칙)	×	
12	제20조(공공후견 및 신탁 지원)	×	
13	제22조(비용의 부담)	×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서는 안 제7조·제8조의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
 - 이 외의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제정안 시행 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추계에 필요한 정보의 부재로 합리적인 추계가 어려워 추계대상에서 제외(위 ‘재정수반별 추계 여부’의 [표] 참고)
-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장애인 가족 실태조사 실시(안 제7조)

- 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 주기로 장애인 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연구용역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보건복지부가 2023년 수행한 “정신질환자 및 가족지원 서비스 확충을 위한 실태조사” 연구용역 사례를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
 -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경험과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2023년 “정신질환자 및 가족지원 서비스 확충을 위한 실태조사” 연구용역(1억 7,800만원 소요)을 실시함
 - 본 추계에서는 장애인 가족 위한 연구용역 수행에 보건복지부 사례와 유사한 1억 7,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함
- 추계결과, 3년 주기로 장애인 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3억 5,600만원으로 추계

[표 2] 장애인 가족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장애인 가족 실태조사 실시 (안 제7조)	178	-	-	178	-	356	71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장애인 가족지원 기본계획 수립·시행(안 제8조)

- 제정안에 따라 정부가 5년 주기로 장애인 가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는 경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보건복지부가 2023년 수행한 “발달장애인 부모가족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” 용역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
 -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가족지원 사업에 관한 정책 과제 도출을 위하여 2023년 “발달장애인 부모가족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” 용역(4,960만원 소요)을 실시함
 - 본 추계에서는 장애인 가족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에 보건복지부 사례와 유사한 5,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함
- 추계결과, 5년 주기로 장애인 가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,000만원으로 추계

[표 3] 장애인 가족지원 기본계획 수립·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장애인 가족지원 기본계획 수립·시행(안 제8조)	50	-	-	-	-	50	1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-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assembly.go.kr